

지 표 조 사 결 과 서 (제23조 제2항)										
사업 내용	사업명				사업기간	~				
	사업지역	(-)								
	면적	전체사업면적				사업목적				
		지표조사면적								
사업시행자	기관명				연락처					
지표 조사	조사기관	고고,역사분야			책임조사원			조사원 이하		
		민속분야			책임조사원			조사원 이하		
		수증분야			책임조사원			조사원 이하		
		고건축분야			책임조사원			조사원 이하		
		자연유산			책임조사원			조사원 이하		
	조사기간	~ (사전조사 ○일, 현장조사 ○일, 정리분석 ○일, 보고서 작성 ○일)								
조사비용 *계약금액기준	고고·역사 분야	원	민속 분야	원	수증 분야	원	고건 축 분야	원		
조사 결과	주변 국가유산 조사결과	지정유산	예) 000삼층석탑 (약 300m이격)							
		비지정 유산	예) 000고분군 (약 300m 이격)							
	사업부지내 국가유산 조사결과	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적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적 없음							
	지상유산	기 존	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							
		신 규								
	매장유산	기 존	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							
		신 규								
	건축물	기 존	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							
		신 규								
	민속자료	기 존	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							
신 규										
지질 (필요시 기재)	기 존	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								
	신 규									
조사기관 종합 의견	지표조사내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고, 구체적인 사항은 뒤쪽 서식에 따라 정리									
「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별표 3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기관명 : (인)										
국 가 유 산 청 장 귀 하										

(뒷면)

국가유산 지표조사 결과표

① 연번	② 유존지역 명	③ 소재지	④ 면적	⑤ 시대	⑥ 종류	⑦유적구분		조사의견			⑪ 비고
						기존	신규	⑧ 의견구분	⑨ 조사면적	⑩ 사유	

<작성요령>

- ① 일련번호 :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.
- ② 유존지역 명
 -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, 분포지도의 국가유산명을 사용한다.
 - 신규유적은 동(리)명+(자연지명)+유적종류+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·사용한다.
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(예.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).
- ③ 소재지 :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(리) 단위까지 기재하고,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.
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.
- ④ 면 적 :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.
- ⑤ 시 대 :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.
- ⑥ 종 류 :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.
- ⑦ 유적구분 : 『문화유적분포지도』에 수록된 유적 등 이미 유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, "기존"으로 구분하고, 당해지표조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 "신규"로 구분한다. 기존의 유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, "신규"로 구분한다.
- ⑧ 의견구분 : 사업시행, 참관조사, 표본조사, 시굴조사, 발굴조사, 현지보존,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. 다만,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,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.
- ⑨ 조사면적 : "의견구분"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, 해당도면에 표기한다.
- ⑩ 사 유 : "의견구분"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.
- ⑪ 비 고 :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.